

문서번호	여성가족과-42440
결재일자	2015.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출산지원사업담당	여성가족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부구청장	
최윤경	홍경남	김화복	도일환	12/18 김병환	
협 조	기획예산과장 법제담당 주무관		권용대 代신봉근 代신봉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15. 12.

교육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예규 제28호, 2015. 12. 2.) 시행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시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서식을 변경하고,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및 지원대장에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자 우리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I 관련 근거

▣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 2015.12.2.)

제8조(급부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①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급부” 대상은 “별표1”에 따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급부”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급부” 대상 전체가 기재된 자체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19호, 2015.7.1.)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1조에 의한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 신청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2014.12.26, 조례 제1020호)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범운영 실시 계획(기획예산과-15259, 2015.12.14.)

## II 개정 배경

▣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 2015.12.2.)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필요

▣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시 관련 신규 통합신청서(출산“급부”통합처리 신청서) 사용 근거 마련

▣ 신규 통합신청서 보안을 위해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및 지원대장 일부 항목 추가 필요

### Ⅲ

### 개정내용

조문	내용	현행	개정안
제6조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
제9조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접수동명, 신청일, 신생아 및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내역 기재	기존 내용에 신청자 부 또는 모의 관내거주기간 및 확인자란 항목 추가
제9조	출산축하금 지원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접수동명, 신생아, 신청자, 지원내역, 환수내역 기재	기존 내용에 신청자 부 또는 모의 관내거주기간 항목 추가

### Ⅳ

### 추진 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2015. 12. 24. ~ 2016. 1. 13.
- 부패·인권·성별·아동 영향평가 : 2015. 12월 ~ 2016. 1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안) : 2015. 1월 중
- 구의회 조례 개정안 상정 : 2016. 2월 임시회
- 조례 공포(안) : 2016. 3월 초

붙임 :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